

재정지원사업 유사중복 방지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1 목적

- 사업단 간 연계 활성화와 유사중복의 사전 방지를 위한 실무 기준 안내
- 적용 범위: 앵커(RISE)사업 단위과제 전체 및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업무

2 유사중복의 유형 및 제재

- 예산 이중집행: 동일 비용을 둘 이상의 예산에서 각각 집행
 - 제재: 환수, 제재부가금(최대5배), 최대5년 보조사업 수급 제한
- 실적 이중계상: 동일 프로그램을 둘 이상의 사업 성과로 각각 보고
 - 제재: 실적 불인정, 평가 감점, 해당분 환수
- 유의: 참여자만 변경한 유사 프로그램 운영도 불허(대학혁신지원사업 지침)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33조, 교육부훈령 제478호 등

3 상황별 판정 기준

상황	판정	준수사항
사업단 간 공동 프로그램의 실적 상호 반영	가능	연계 표시·종합 집계 시1건 처리·예산은 단일 사업단 집행
사업단 간 비용 부담(재료비·강사로 구분 부담)	가능	동일 사업(앵커) 내에 한함·증빙1건은1개 사업단만 사용
서로 다른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동일 프로그램 혼합 집행	불가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도 불가
타 사업 예산 프로그램과의 연계 실적 확보	조건부 가능	앵커 예산으로 후속 단계 수행·해당 단계 실적만 반영

4 판정 기준 및 영역

영역	유사중복(지적대상)	연계(장려대상)
예산	동일 비용의 양측 집행	단일 예산 단일 집행
실적	연계 표시 없는 중복 반영	반영 방식 사전 합의
문서	기록 없는 개별 진행	공문·협약의 역할 분담 명시
내용	명칭·대상만 변경한 동일 프로그램	상호 보완적 역할 구성

5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준

■ 사업단 간 비용 분담(허용)

- 비용 항목 단위로 부담 사업단 지정(동일 항목 분할 지양)
- 증빙1건은1개 사업단에만 사용
- 분담 내역의 사전 문서화(내부결재·공문)
- 동일인·동일 활동에 대한 수당 중복 지급 금지

■ 사업 간 예산 혼합(금지)

- 서로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한 프로그램에 함께 사용 불가
- 결과보고서 내 타 사업 로고·예산 병기 금지

■ 타 사업 프로그램과의 연계(조건부 가능)

- 후속 단계 연계: 타 사업 프로그램 수료자를 대상으로 앵커 예산의 후속 프로그램 운영→ 후속 단계 실적만 반영
- 단계 분담 설계: 기획 단계부터 역할을 구분하여 각자 사업계획에 반영
- 협력 실적: 예산 미투입 시 정량 실적 불가, 협력 체계 구축 실적(공문·회의록 근거)만 가능

6 연계 프로그램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 참여 사업단 간 역할 분담 사전 협의
- ☐ 프로그램의 사업계획 포함 여부 확인
- ☐ 타 재정지원사업 지원 여부 사전 점검
- ☐ 비용 항목별 부담 사업단 확정
- ☐ 실적 반영 방식(종합 집계1건 처리) 합의
- ☐ 내부결재·공문에 연계 사업단·예산 부담·실적 반영 방식 명시
- ☐ 연계 프로그램 대장 등록
- ☐ 증빙별 귀속 사업단 지정 및 단일 사용
- ☐ 결과보고서에 연계 사실 표기
- ☐ 보고 전 종합 집계 중복 반영 여부 확인

7 유의사례

- 산업체 후원금: 후원금이 지급된 항목에 사업비 중복 지급 불가→ 항목 분리 집행
- 공용 장비: 구입비는 구입 사업에만 집행, 활용은 자산 관리 규정 확인
- 동일 강사: 서로 다른 강의의 강사료 각각 지급은 정상, 동일 강의에 대한 양측 지급은 금지
- 연차 반복 프로그램: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시 정상, 기존 실적 재제출은 중복